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기납부(주민번호 변경)에 따른 수시부과 취소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37,411,600	37,411,60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국세청통보자료, 납부상세내역 1부. 끝.

주무관 **박병우** 지방소득세1팀 **이덕배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06/08 **문경수**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9212 () 접수 ()
 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)3423-5717 /전송 02)3423-8834 / djra77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